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1.12.16. 공포)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 시·군·구 지정 및 신청을 위하여 관련한 신청 서식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서 위임된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서식 마련(안 제2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서 위임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제정안이므로 신·구조문대비표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사항 없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군·구 특례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군·구 특례 발굴 조사서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영 제120조제3항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군·구 특례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군·구 특례 발굴 조사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군·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대표자)		
	자치단체 주소		지방자치단체 종류 []시 []군 []자치구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 상 특 례	기능명(단위사무명)		
	분야 / 소관부처		
	근거법령(조항)		
	현 법령상 처리권자		
지정절차 이 행	해당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		
특 례 필요성	특례 지정 요건(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현행 처리절차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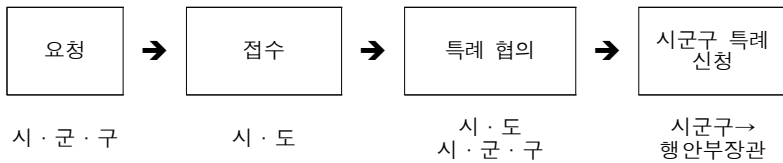
신청기관명

(직 인)

귀하

신청기관	1. 시·군·구 특례 신청서 1부
제출서류	2. 시·군·구 특례 발굴 조사표 1부

처리 절차



시·군·구 특례 신청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비전

3. 지역의 특징

가. 인구 요소

나. 지리적 요소

다. 사회적 요소

4. 특례 부여 필요성

가. 지역의 특징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나.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발전전략 이행

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

5.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

6. 수행조직 및 재원조달 방안

시·군·구 특례 발굴 조사서

연 번	기 능 명		분 야	소관부처
단위사무	단위사무명		근거법령(조항)	현 법령상 처리권자
특례 필요성	지역발전 전략			
	현 체제의 어려움			
	이양 필요성			
	기대효과 (목표기한)			
처리현황	‘21년			
	‘20년			
	‘19년			
현 처리기관의 담당인력				
현 처리기관의 연간 예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지 제4호서식]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대표자)		
	자치단체 주소		지방자치단체 종류 []시 []군 []자치구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 상 특 례	기능명(단위사무명)		
	분야 / 소관부처		
	근거법령(조항)		
	현 법령상 처리권자		
지정절차 이 행	해당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		
	특례협의회 설치·운영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120일 이내 협의 완료		
	[]구성을 요청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되었으나 협의 미완료		
특 례 필요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특례협의회 미구성		
	특례 지정 요건(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현행 처리절차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군·구 특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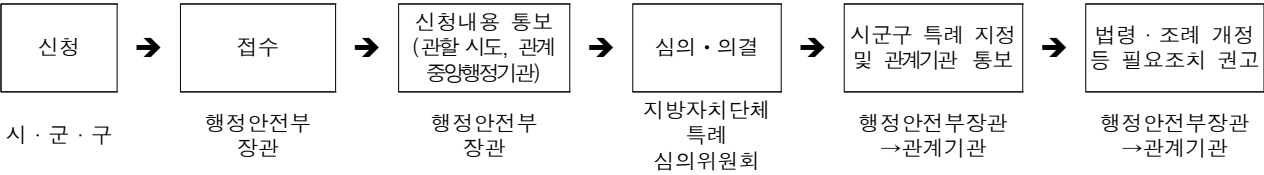
(직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기관
제출서류

- 1. 시·군·구 특례 신청서 1부
- 2. 시·군·구 특례 발굴 조사표 1부
- 3. 시·군·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1부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군·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시·도	자치단체명(대표자)		
	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시·군·구	자치단체명(대표자)		
	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협의 요청일		협의 완료일	
협의 내용			
시·도시·군·구 간 협의 내용			
신청 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시·도) (직 인)			
(시·군·구) (직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특례 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회가 완료되지 않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특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안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4항)

행정안전부 제 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서

□ 지정 내용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시·군·구	특례명(기능명)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